

디자인심사동향

D e s i g n

E x a m i n a t i o n

R e p o r t

APRIL 2019

Vol. 12('19.4)

- | 재미있는 디자인권 이야기_장난감과 디자인출원
- | 심사 동향_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 디자인 법제분과위원회 개최
- | 제42차 물품분류연구회 개최
- | 특허청 심사 상징물 선정 진행
- | 해외 동향_WIPO 제41차 SCT(상표·디자인 상설위원회) 회의 개최
- | 디자인이슈_美, AAG사 로고디자인 저작권 등록 거절 사건
- | 현재, 군복 디자인 소지 금지 합헌(6:3) 결정
- | 참고자료_국방부 군복 디자인 등록 현황
- | 특허·영업비밀·디자인침해신고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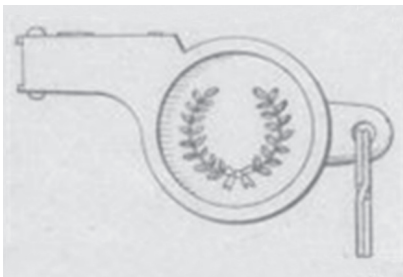
장난감과 디자인출원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 날, 어버이 날이 연달아 있고, 여행도 많아진다. 선물을 사야 할 일도 자연스럽게 많아진다. 특히 어린이 날, 모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무슨 장난감을 사줘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마련.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거니와, 세상에 너무 많은 장난감이 있다. 게다가 웬만한 가전제품 만큼이나 비싼 것도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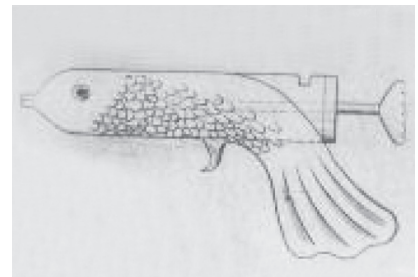
특허청에 출원된 장난감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출원건이 발견된다. 대략 1964년부터 완구디자인이 출원되기 시작했는데, 처음 등록된 완구는 호각(64)이고, 다람쥐장난감(64), 물총(65), 망원경(65), 모빌(65) 순이다. 지금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겠지만, 당시 아이들의 환심을 사기에는 충분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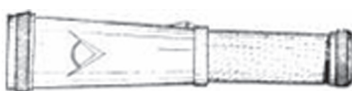
호각, 3019640000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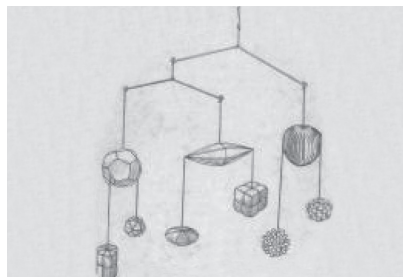
장난감다람쥐, 3019640000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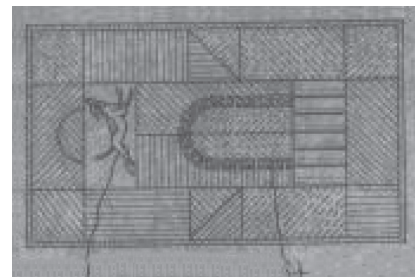
물총, 3019650000231



완구용 망원경, 3019650000552



모우빌, 3019650000494



완구, 3019650000666

197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완구는 군용자동차, 과학완구, 동물인형, 놀이판 등이 주종이다가, 1976년 들어서 처음으로 인간형태의 로봇완구가 처음 등장한다. 공교롭게도 1976년은 로봇 태권V가 공전의 히트를 치며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때이다. 거대한 로봇을 타고 적을 무찌르는 활극만화는 만화영화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던 그 시대에도 전국 초등학교 학생들을 극장으로 불러 모으는 힘을 발휘했다.



로봇완구 (30-1976-0000580)

그리고 이제는 거의 대부분 로봇 완구가 주종이다. 로봇도 시리즈로 다양하게 출원되고 변신이 되는가 하면, 디지털 기술이 더해져서 반짝거리고 소리를 내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격세지감이라 할 만하다. 봉제인형들도 과거에는 사람이나 동물형상을 있는 그대로 비슷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대부분 캐릭터화되어 머리와 눈이 크고, 팔·다리가 작게 만들어 저서 너무 귀엽다. 놀이판이나 과학완구, 군용품 같은 장난감은 별로 없어 보인다.

로봇을 주제로 한 변신장난감이 늘어나니 디자인출원 도면도 복잡해졌다. 변신로봇을 디자인 출원할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으로 출원할 수도 있지만, 변신하는 과정을 포함한 변신 전후 모습을 출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면A, B, C 방식으로 하여 ‘변화전, 변화중, 변화후’의 각각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작성한 도면을 제출하게 된다. 또 여러 가지 장난감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 경우에는 ‘한 벌 물품’디자인으로 출원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여러 장난감 구성품이 한꺼번에 그려진 도면과, 각각의 구성품의 도면을 도면A, B, C 방식으로 여러 각도에서 그려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등록하려는 장난감 디자인이 유명캐릭터에 기반한 것이라면, 디자인등록과 더불어 저작권의 문제도 발생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이는 등록되지 않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디자인 출원에서 '디자인 도면'은 특허출원의 '청구범위'와 대비된다. 디자인 도면은 출원인의 창작 의도를 이해하고 안정적 권리보호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디자인 도면은 '기본도면, 부가도면, 참고도면'으로 구분되어 출원서에 첨부되고 있다.

그러나, 부가도면과 참고도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대리인 없이 출원하는 출원인에게는 도면의 종류를 잘못 지정하여 거절의견을 통지 받는 등 출원상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현행 3개 종류로 구분된 도면을 기본도면(부가도면을 포함)과 참고도면으로 통합·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원인이 도면제출이 편리해지고, 도면의 종류를 잘못 지정하여 발생하는 디자인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심사처리가 좀 더 빨라지는 등 심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특수기호 글자체 디자인 심사에서 출원인이 다양하게 선택하여 출원할 수 있어야 하나 기본으로 지정글자 119자를 필수로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용의사와 무관하게 불필요한 기호(119자)까지 과도한 도시를 요구하여 출원인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거래실정 및 출원인 희망에 따라 필수 지정글자 도면상의 기호 개수를 최소화하여 출원·등록 가능하도록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5월부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8월경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디자인 법제분과위원회 개최

특허청은 지난 4월 16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제1차 디자인법제분과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신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등장하는 물품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 법률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쟁점 사항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디자인과 물품의 정의규정 재검토 및 디자인보호대상 확대에 따른 제도적, 실무적 예상쟁점을 사전에 논의하는 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다양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제42차 물품분류연구회 개최

특허청은 제42차 디자인 물품분류연구회를 개최하여 2019년 11월 개최예정인 로카르노 국제분류 전문가회의(WIPO) 의제 발굴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디자인심사정책과 분류전문관, 분류용역기관 분류원 등이 참석하여 의제 방향 및 국내 다출원 물품과 신규 물품 등 출원 현황을 분석하고 다기능의 융복합 물품분류의 쟁점사항 등 제안사항을 논의하였다. 향후 디자인DB 재분류 사업과 연계하여 물품분류연구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로카르노 국제분류 전문가회의 의제 협의 등 연구회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청 심사 상징물 선정 진행

특허청은 심사관의 사기고취를 위하여 심사관 상징물을 선정하고, 우수심사관을 기념하는 명예의 전당(가칭) 설치를 진행 중이다. 종래 특허청의 마크였던 거북선, 해시계 등과 같은 대신해, 심사관을 상징할 수 있는 심볼을 제작하기 위하여 2차례 특허청 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결과 선정된 상징물로는 ‘심사관, 돋보기, 측정자’이고, 이를 바탕으로 상징물을 제작하여 5월초 공식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제작된 상징물을 바탕으로 하여 심사명장, 올해의 심사관 등 우수 심사관들을 기념하는 명예의 전당 게시판을 제작하여 현관에 설치하고, 개별 수상 심사관에게는 기념물을 제작·지급할 예정이다.

선호도	상징물	투표수
1	돋보기 	18.2%
2	심사관(사람) 	18.2%
3	캘리퍼스(측정자) 	7.7%
4	해시계 	6.7%
5	저울(천칭) 	6.7%
6	등록증 	6.2%

WIPO 제41차 SCT*(상표·디자인 상설위원회) 회의 개최

* SCT :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 회의명 : WIPO 제41차 SCT(상표법 상설위원회) 회의
- 일시/장소 : 2019.4.8.~ 4.11. 스위스 제네바 소재 WIPO 본부
- 회의 내용
 - 디자인법 조약(DLT)은 2020년 상반기 외교회의 개최여부에 대하여 2019년 WIPO 일반총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함
 - GUI, ICON, 글자체 디자인과 물품에 관련한 설문 결과를 발표하여, 현재 또는 향후 법제도를 진행하려는 회원국의 큰 호응을 얻음. 다만 설문참여 기간을 올해 7월 31일까지 연장하여 회원국의 보다 많은 참여를 독려했으며, 최종 결과는 차기회의에서 발표할 것임
 - 사무국은 DAS 현황을 발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DAS 현황에 대해 업데이트를 실시할 것임을 밝힘
 - 스페인 제안에 따라 파리협약 11조와 관련한 각국의 실무(박람회 우선권/ 신규성 예외주장)에 관한 설문에 대한 추가 질의를 수렴한 후, 설문 최종본을 완성함. 완성된 설문이 배포되면 회원국은 7월 31일까지 답변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답변은 사무국이 차기회의에서 정리 후 발표할 것임

* 설문취합 자료 등 주요 회의 내용과 회의 실황 VOD는

WIPO 홈페이지(<http://www.wipo.int/>, HomeKnowledge-Meeting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0415

美, AAG사 로고디자인 저작권 등록 거절 사건

■ 사건 개요

- 2013년 2월, 세계 3위였던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5위 '유에스 에어웨이 그룹'이 합병해 세계 최대 항공사,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룹(American Airline Group · AAG)이 탄생

- 'AAG'는 양사의 동등한 통합 원칙에 따라 이름은 '아메리칸'으로 하되 비행기 동체에는 새로운 로고, 꼬리 날개에는 '유에스 에어웨이'가 쓰던 문양을 적용하고,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16~'18년까지 3회 거절됨 (*상표는 등록)

* 등록신청 로고 상단은 파란색, 하단은 빨간색 마름모꼴 가운데, 흰머리 독수리가 대각선으로 뚫고 나가는 형상임



■ 경과

- ('16.6.3) American 항공은 최초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16.10.4.) 저작권청은 저작물성이 부족(lacks the authorship)하다는 이유로 거절
- ('16.12.20) American 항공은 저작권이 인정되는 최소한의 독창성을 넘어선다는 주장과 함께 재심을 요구
 - * 사다리꼴과 함께 독수리 머리가 포함되어있고, 대문자 'A'의 한쪽 다리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주장함
- ('17.4.12.) 저작권청 재심결과 “저작권 등록이 될 정도의 충분한 고유성, 창의적 예술성, 또는 저작물성이 없다고 판단”

- ('17.4.12.) 항공사는 두 번째 심의를 신청하며, 로고 내 기하도형에 큰 변형("significant modification" of the "underlying geometric shapes.")을 가했다고 주장하였으나,
- ('18.1.8.) 저작권위원회는 "흔한 기호 또는 디자인"에 대한 등록을 금지하는 저작권법 조항을 이유로 들었고, "변형의 내용은 단순한 것"이라고 판단함

* 미국 저작권법에 "일반적인 도형·기호·문자" 등을 닮은 디자인은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결론** : 기다란 사다리꼴 형태의 로고가 등록 허가에 필수조건인 **독창적·창의적·예술적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이유로 거절함**

* "A mere simplistic arrangement of non-protectable elements does not demonstrate the level of creativity necessary to warrant protection," Catherine Zaller Rowland, senior adviser to the register of copyrights

* "While the bar for creativity is low, it does exist and the work cannot glide over even its low heights."

* 출처 : USA Today "Copyright board ruffles AA's feathers by rejecting logo copyright again", Jan. 30, 2018; <https://www.usatoday.com/story/travel/flights/todayinthesky/2018/01/30/copyright-board-rejects-american-airlines-logo-copyright-again/1077964001/>

■ 미국의 저작권청(www.copyright.gov) 역할

- 미국 저작권청은 우리 저작권위원회와 달리 저작권 등록을 심의하는 조직이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저작물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저작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후 등록함
- 행정관청이므로 저작권 위원회의 판단이 법적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나, 현재까지 미국 저작권위원회에서 판단한 내용이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가 없으므로 위원회의 저작권 판단에 대해 매우 신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헌재, 군복 디자인 소지 금지 합헌(6:3) 결정

- “안보상 부작용 감안 착용금지 넘어 유통규제 불가피”
-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것은 합헌

■ 외관상 실제 군복과 구분하기 어려운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19.4.15)

- 헌법재판소는 A씨가 유사군복의 판매목적 소지를 금지하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8조2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
 - *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 헌재는 “유사군복을 입고 군인을 사칭해 군에 대한 신뢰저하 문제로 이어져 향후 발생할 국가안전보장상의 부작용을 상정해볼 때 단지 유사군복 착용 금지로는 입법목적 달성에 부족하다”고 판단
 - “판매목적 소지까지 금지해 유사군복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규제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 * “유사군복의 모방대상인 전투복은 군인 전투용도로 세심하게 고안돼 제작된 특수한 물품”이라며 “이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지 못해서 입는 개인의 직업 자유나 일반적 행동 자유의 제한 정도는 국가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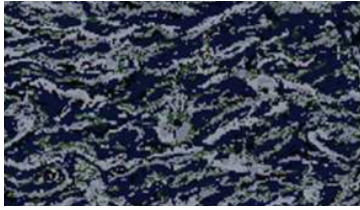
■ 전투복 디자인의 보호

- 현재, 국방부가 출원한 얼룩무늬 직물지 등록권이 5건 있으나, 직물지 권리범위가 전투복 제작에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님
 - 직물지↔의류는 다른 물품에 해당하여 침해로 판단 어려움
- 심사실무상, 군 전투복을 모방한 유사군복은 법 제34조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을 적용하여 거절중임
 - 그동안 군복디자인은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였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군복디자인의 폭넓은 보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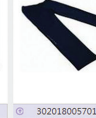
국방부 군복 디자인 등록 현황

- 최근 군용 복식도 출원등록 추세이나 전투복에 대한 등록건 없음 (국방부 등록 129건)
 - 정복 및 모자, 체육복, 글자체 등에 대한 출원등록건 다수 확인됨

〈 국방부 명의로 등록된 전투복 직물지 〉

		
3020100008401 대한민국(국방부 장관)	3020100008402 대한민국(국방부 장관)	3020100008403 대한민국(국방부 장관)
		
3020100054892 대한민국(국방부 육군 특수전 사령관)	3020120016609 대한민국(국방부 해병대사령관)	3020180032120 대한민국(국방부 해군참모총장)

〈 국방부 명의로 등록된 군인 관련 디자인 사례 〉

								
3020150032699 001 드레스	3020140062020 M001 재킷	3020150032398 M001 재킷	3020150032402 M001 재킷	3020150032682 M001 재킷	3020150032682 M001 재킷	3020150032698 M001 재킷	3020140060390 M001 티셔츠	3020140060402 M001 티셔츠
								
3020150032555 001 와이셔츠	3020180057006 M001 운동용상의	3020180057010 M001 운동용바지	3020170049280 M001 장갑	3020170048461 M001 두건	3020150032580 M001 모자	3020150032602 M001 모자	3020150032603 M001 모자	3020150032604 M001 모자
								
3020150032641 M001 모자	3020150032687 M001 모자	3020170051539 M001 모자	3020150032565 M001 모자	3020150032578 M001 모자	3020150032639 M001 모자	3020150032683 M001 모자	3020180061434 M001 모자	3020150032605 M001 견장
								

www.patent.go.kr:7078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특허 · 영업비밀 · 디자인 침해 신고 안내

[2019년 3월 19일 개정 사법경찰직무법 시행]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ntellectual Property Police

www.patent.go.kr:7078



특허청 산업재산경찰이란?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특허·영업비밀·디자인·상표·부정경쟁행위(상품의 형태모방) 침해에 관한 범죄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입니다.



특허청 산업재산경찰의 업무



2019년 3월 19일 시행된 개정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특허청 산업재산경찰의 수사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의2

상표
침해사건
수사

3월 19일
개정법
시행

특허 · 영업비밀 ·
디자인 · 상표 ·
부정경쟁행위
(형태모방)
침해사건 수사



특허청 산업재산경찰의 특징

산업재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심사관과 심판관 출신 특별사법경찰이 초동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기술 전문성

중앙행정기관
최고 수준의
전문 기술 인력

법률 전문성

심사, 심판,
각급 법원,
검찰청
파견 경험

수사 노하우

2010년 이후
상표권 침해 관련
2,700여명
형사 입건

www.patent.go.kr:7078



신고 대상

1. 특허청에 등록된 권리에 대한 침해

-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 「특허법」 제225조
-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2. 영업비밀로서 보유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2항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영업비밀의 침해 유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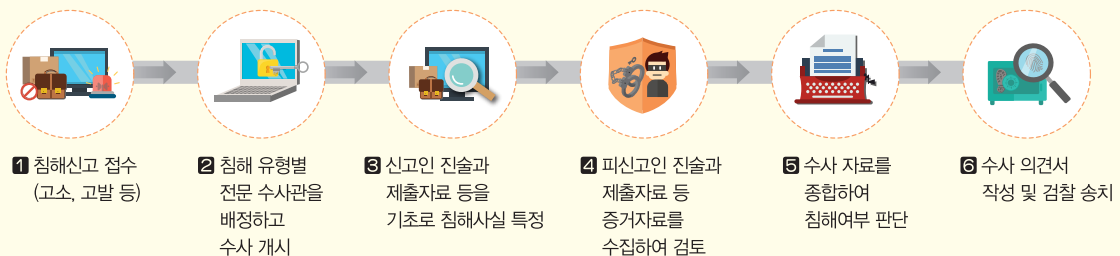
유형1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유형2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유형3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특허 · 디자인 · 영업비밀 신고의 차이점은?

구 분	친고죄	미수/예비음모	양벌 규정	공소 시효	고소 기간	벌 칙
특 허	○	×	○	7년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디자인	○	×	○	7년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영업 비밀	×	○	○	10년 (국내) 7년 (국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국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국외)

※ 2019년 7월 9일 이후 영업비밀의 공소시효는 국내외 모두 10년으로, 벌칙은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 이하의 벌금(국내),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억 이하의 벌금(국외)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사건 처리절차



www.patent.go.kr:7078



신고 및 상담

인터넷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www.patent.go.kr:7078

전화 · 팩스 · 이메일 · 주소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특허 · 영업비밀 · 디자인 침해신고 공통)

☎ 전화 | 042)481-5812, 8324

☎ 팩스 | 042)481-8257

✉ 이메일 | dldusgh@korea.kr,
ahreum9533@korea.kr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담당자



신고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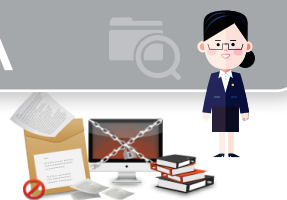
신고서(고소장) 및 증거자료를 이메일,
팩스 또는 등기로 제출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www.patent.go.kr:7078

신고서(고소장) 양식 내려받기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www.patent.go.kr:7078 접속
→ 정보마당 → 자료실

Q & A



Q1 특허청 산업재산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및 영업비밀의 침해
사건에 대해서 특허청 산업재산경찰은 일반경찰과 동일한
수사권한이 있고,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여 입건
및 검찰 송치를 합니다.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 제6조제35호 및 제35호의2

Q2 특허청에 신고 시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걸리는 기간과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신고서를 접수하고 수사가 진행되어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특허청에 납부하는 별도의 수수료는 없고 소요기간은 원칙적
으로 2~3개월입니다. 다만, 사건의 규모, 검사의 수사지휘
등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Q3 특허청 산업재산경찰이 침해로 판단하는
경우에 민형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산업재산 침해로 판단되는 경우 특허청 산업재산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의 공소 제기를 통해
법원이 최종 판결합니다. 침해자는 형사상 제재로 특허법
제225조,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인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형사상의 침해의견이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